정 관

제정: 정관 2007.01.16.
개정: 정관 2010.12.02.
개정: 정관 2016.08.23.
개정: 정관 2018.03.07.
세부규정 2019.10.03.
개정: 정관 2021.12.28.
세부규정 2023.07.2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재단법인은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Women's International Foundation(이하 'KOWINNER')이라 한다.

제2조(한민족의 정의)
한민족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국적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제1항의 주사무소 관리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재단 주요 자료들은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임기 동안에 한해 이사장이 거주하는 해외에 사무국을 개설하여 재단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 여성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국내외 각 지역 한민족 여성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회원들의 발전 도모
3.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민족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대한민국 국위선양 도모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 강화사업
   가. 세계한민족여성 인재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나. 세계한민족여성의 연대강화 활동 지원 사업
   다. 여성가족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보조 및 홍보 사업
   라. 해외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2. 차세대 한민족 여성 리더 교육 및 양성 사업
   가. 차세대 한민족 여성 리더 양성 사업
   나. 차세대 한민족 여성 경제인 양성 사업
   다. 차세대 한민족 여성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라. 차세대 한민족 여성 인재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3. 세계 한민족 여성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전문분야 강화 사업
   가. 세계 한민족 여성 경제 전문인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나. 세계 한민족 여성 문화교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다. 한국 전통문화 이해, 자긍심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
   라. 세계 한민족 여성 지역·분야별 교육 기회 제공
   마. 세계 한민족여성 재외동포 권익보호, 지원 사업
   바. 소외된 한민족여성 지원 및 복지 사업
4.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가.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한 전산체제 구축 사업
   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정보 교류, 정보 제공,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다. 회원, 산업,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라. 세계 한민족 여성의 공동 발전을 위한 지속적 연구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목적사업 상 제공하는 이익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의 원칙)

재단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어떠한 정치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지회)

① 재단의 지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 30명 이상의 회원이 지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를 거친 경우
3. 매년 2월 1일까지 재단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② 지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 정관을 준용하되, 각 해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9조(회원의 자격)

재단의 회원은 한민족 여성으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며, 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회원으로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또는 '세계한민족여성재단 국제컨벤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사 1인, 기존 회원 2인 이상 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의 추천을 받은자. 다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본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공관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대체 가능
4. 재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가입비 를 재단에 납입한 자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재단 운영 참여권과 발언권
2. 재단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네트워크 활동 참가권
3. 그 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권리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정관 시행 세칙에 따라 가입비 및 회비를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 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① 이사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재단의 목적 수행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재단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③ 제2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자격 상실
④ 포상과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13조(운영위원)
① 재단에 한화 10,000,000원 이상 가입비와 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평생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재단에 한화 1,000,000원 이상 가입비와 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단기운영위원으로 한다. 단기운영위원의 임기는 기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평생운영위원과 단기운영위원은 이사회 참석 및 의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이상 3인 이하
3. 이사 3인 이상 25인 이하
4. 행정감사 1인과 재무감사 1인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차기 이사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 활동한 이사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현임 이사장의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이사는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한 국가에서 선임될 수 있는 이사는 최대~~3~~명으로 제한하고 회원수가 100명을 넘는 국가에서는 1명, 150명을 넘는 국가에서는 2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내 추천 방식으로 임명되며, 3명의 부이사장이 ~~모두~~ 임명된 경우 1명은 수석부이사장이 된다.
④ 감사는 행정과 재무에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⑤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출된 차기 이사장과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6조(이사장과 이사의 자격 및 의무)
① 이사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1년 이상 활동한 이사이어야 한다.
② 이사는 제13조 제1항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한다.
③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임기 중 개최되는 모든 유형의 이사회에 10분의 7 이상의 비율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7 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의 단독 제안 또는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가 해당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 부정의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 간 분쟁을 유발한 행위
5.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②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3항의 의무를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다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라 해임이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보선과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부터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사장의 업무는 수석부이사장이 대행한다. 수석부이사장이 없을 경우, 부이사장 중 가입기간 순으로 대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 처리의 감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상 부정 또는 부당한 점에 대한 이사회에 시정 요구와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 이사회에 시정 요구와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 참석과 그 밖의 의견 진술

제23조(임원의 보수)
재단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사안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법률고문, 자문위원)
① 재단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재단의 발전에 공헌이 큰 전임 이사장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검토 등을 위해 법률적 학식이 높고, 법조경력이 풍부한 대한민국의 변호사, 그리고 외국법 자문사를 법률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 법률고문, 자문위원(이하 '고문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
⑤ 고문 등의 추대 또는 위촉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고문 등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이사
4. 감사
5. 운영위원

② 의결권자의 총수는 25명 이하로 하고, 감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안을 제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에 이사장이 전자우편 또는 국제 등기 우편을 보내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때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과 정관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과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7.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8. 관련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의결 제한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 개회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사무국의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재적 의결권자의 수와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

3. 의결을 위임한 임원의 수와 위임장 상세 내역
4. 그 밖의 출석자의 명단
5. 이사회 의결 상세 사항과 이사회 진행 경과
6. 발언자들의 발언 요지

③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31조(상설위원회)

재단 상설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문화위원회, 사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컨벤션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둔다.

1.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2.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 뒤, 지체 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이고,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4. 재단 이사는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5. 상설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2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특별조항으로서 아래 1항, 2항을 제정한다.

1.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재단의 차기 이사장 후보 2인을 포함, 모든 임원 후보들을 추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제31 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따른다.

제33조(임시위원회)

① 임시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개정 위원회
2. 조사위원회

② 각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임시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각 임시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 뒤, 지체 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 구성의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각 종료된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거주국에 원활한 업무 집행과 사무 처리를 위해 그 임기 동안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서기 1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이사장은 위 직원의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를 관리한다.

④ 서기는 이사회와 그 밖의 재단 회의의 모든 회의록을 관리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당시의 출연금, 개인·단체·정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양도·담보 제공하거나,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그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수증, 교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재원)

재단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2.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등의 후원금
4. 개인의 기부금과 찬조금
5. 회원의 가입비
6. 임원의 연회비

제38 조(장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각 1부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 내용,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3조(자체 회계 감사)
재단의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44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5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46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51조(정관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정관변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출연자	비 고
-	출연금	-	48,991,481원		
	계		48,991,481원		